

실습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내규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실습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소양 함양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2.25.>

제2조(실습과정지도) ① 실습과정은 참법률가지도센터장이 지도·감독한다. 다만, 참법률가센터장은 학생의 상담지도교수 또는 진로지도교수에게 당해 학생의 실습과정 지도·감독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9.2.25.>

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습업무를 지도할 지도교수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.<개정 2019.2.25.>

제3조(실습기관) ① 대학원은 학생들의 실습이 교육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기관을 선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원이 선정한 곳이 아닌 다른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실습기관장의 실습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참법률가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<개정 2019.2.25.>

제4조(실습의 공고) 대학원은 실습기관과의 협의로 가능한 한 매학기 실습기간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실습기관명, 기간, 교육내용 등 실습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2.25.>

제5조(실습신청) 실습을 원하는 학생은 공고 내용에 따라 자신이 희망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습신청을 하여야 한다. 실습하고 싶은 기관의 순위를 정하여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9.2.25.>

제6조(실습 대상자) 실습 대상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하고, 학기 종료 후 방학 중에 실습을 한다. 휴학 또는 잔여학기 1학기 이하 중에 행한 실습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습할 수 있다.<개정 2019.2.25., 2021.9.06.>

제7조(실습의 구분) ① 실습은 전·후반기로 나누어 매 학기 종료 후 7월과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전·후반기에 실습을 받을 학생의 분류는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참법률가센터장이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9.2.25.>

제8조(실습기관에의 배정) ① 실습기관에서 실습할 학생의 배정은 참법률가센터장이 원장, 학생부원장과 심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9.2.25.>

② 참법률가센터장은 위 결정을 함에 있어 예비종합시험 응시여부, 실습기관의 의사, 학생들의 희망순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2.25., 2023.01.09.>

제9조(실습 시간) ① 실습은 2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

실습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나, 총 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.<개정 2021.9.06.>

②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실습일정과 시간은 참법률가센터장이 실습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.<개정 2019.2.25.>

제10조(실습일지 등의 작성 및 제출) 실습 대상자는 실무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실습일지 등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를 참법률가센터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2.25., 2021.9.06.>

제11조(실습 대상자의 감독) 참법률가센터장 또는 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습 대상학생들을 적절하게 지도 감독한다. 이 경우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도할 수도 있다.<개정 2019.2.25.>

제12조(실습의 연기) ① 실습 대상자가 병역, 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로 실습기간 도중에 실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실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연기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.

제13조(평가) 실습성적의 평정은 실습기관의 지도관이 작성한 「대학원생 실습성적 평정표」의 양식에 따라 참법률가센터장이 행하고,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관련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학점은 재학 중 1회, 실습 종료 이후 학기 「실습과정」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인정한다.<개정 2019.2.25., 2021.9.06.>

제14조(준수사항) 실습 대상자는 실습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실습 대상자는 실습기간 중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실습 대상자는 실습기간 중 당해 실습기관 및 참법률가센터장,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19.2.25.>

제15조(준용규정) 실습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09.06.>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 개정일 현재 잔여 학기가 1개 학기 이하자의 경우 제13조(평가)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<2023.01.09.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개정 규정 제8조(실습기관의 배정) 제2항의 적용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